

#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04월 2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세대주 성명 | 성명<br>생년월일        | 주 소           | 지연 신고사항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
| 허**    | 허**<br>1954-01-22 |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| 무단전출    |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 담당자 : 장 순해 문의전화 : 033-631-1406 )

2014년 04월 21일

조양동장 인

